

## <졸업고사 면제 세부사항>

※ 졸업고사 면제 해당 학생은 졸업고사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나, **샘물 시스템 내 신청 및 면제 신청서 제출 필수**

※ 2025.03.24.부터 면제 제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으며, 면제 제도 확대에 따라 **가산점 제도는 폐지**

### ※ 면제 대상자

- 졸업고사 응시 대상자 전체(이수학기 7학기 이상 재학생, 수료생, **조기졸업자**)

### ※ 면제 기준

① 경영학부 전공평점평균 **3.0 이상일 경우** → 전공과목 GPA 계산표 제출

과정	기준	전공평점평균
단일전공(전공심화 및 부전공), 다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, 편입	<b>졸업고사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경영학부 전체 전공학점</b>	<b>3.0 이상</b>
외국인 유학생	막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학점(증빙 서류 제출 X)	2.0 이상
<b>조기졸업자</b>	<b>졸업고사 면제(증빙 서류 제출 X)</b>	

- 과정에 따른 경영학부 전공 총 이수 학점과 무관(ex. 36학점, 60학점 이수 등의 기준 폐지)

- 학생의 총 이수 학기와 무관(조기졸업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)

② 기준자격증 및 기준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→ 자격증 합격 통지서 제출

자격증	CPA(1차) AICPA(최종) 세무사(1차) 노무사(1차) 관세사(1차) 자산설계전문가[CEP](1차) 국제공인재무설계사[CFP](최종) 국제재무위험관리사[FRM](최종) 생산재고관리사[CPIM](최종) 감정평가사(1차)
-----	---

③ 취업률이 인정되는 기업,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(인턴, 아르바이트 제외)

면제 증빙서류 종류	취업(인턴, 아르바이트 제외)	1) 재직증명서(입사예정증명서, 합격확인서) 2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: 가입자 구분 - 직장 가입자
	창업	1)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2) 창업 후 1년 동안 총 660만원 이상의 매출 증빙자료 3) 지도교수의 추천서
	ROTC	1) 임관예정증명서 제출
	공무원	1) 합격증 제출